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24년 인천보훈병원 의사직 8차 공개채용 공고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채용부문 및 지원자격

가. 채용분야, 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직종	인원	자격요건
공 통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필수)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정년(60세) 초과자 지원 가능
영상 의학과	전문의	1	· (필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계		1	

※ 필수 자격요건은 전 항 모두를 충족해야 함.

나. 추진 일정

서류접수	서류발표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임용
'24. 4. 17.(수)~ '24. 4. 26.(금) 12:00까지	'24. 4. 30. (화)	별도 공지	별도 공지	개별협의

다. 근무조건 및 운영형태

채용분야	직종	운영 형태
공 통		· 보수수준 : 별도협의 · 고용형태 : 계약직(입사일~'25. 2. 28.) ·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약기간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 평가결과 미흡 시 계약종료
영 상 의 학 과	전문의	· 근무형태 : 주 5일(월~금), 08:30~17:30(휴게 1시간 포함) · 직 무 : 당해 진료과 전문의

라. 우대조건(가점사항)

구 분	내 용	가 점
취업지원 대 상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
장 애 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시험별 만점의 10%

*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마.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p>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p>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2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 절차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나. 전형별 일정

전형구분	일시(예정)	결과발표(예정)	비고(합격기준 등)
서류접수	'24. 4. 17.(수)~ '24. 4. 26.(금) 12:00까지	'24. 4. 30. (화)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면접전형	별도 공지	별도 공지	· 면접점수 고득점순 합격 · 면접점수 60% 미만인자 부적격 으로 불합격
합격자등록	별도공지		-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가. 서류접수 기간 : '24. 4. 17.(수) ~ '24. 4. 26.(금) 12:00까지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소개서, 논문게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 양식으로 작성) ② 의사면허증·전문의 자격증 사본
해당자	① 장애인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사본 ② 해당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③ 기타 보유한 자격·경력증명서

※ 지원서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채용이 취소됨

※ 지원서상 확인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연락 예정으로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 기재

※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성별·나이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체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요망

다. 접수방법: 이메일(incheon_recruit@bohun.or.kr) 접수

※ 메일 제목 하단 예시로 작성: 예)“(진료과)_성명”으로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 접수 마감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서 접수

4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제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incheon_recruit@bohun.or.kr)로 제출하면,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우리 공단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절대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발표 또는 임용 후에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병원이 지정한 근무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직무를 겸무하거나 보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자는 인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수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인근 병원에서 수검한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개인이 우선 지급하되, 임용 이후 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병원 총무부(032-363-9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장